####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305回國會 第 11 號 (臨時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2年1月17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 議事日程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審査된案件

1.	간사 선임의 건 ·····	2
О	<u> </u> 사(주성영) 인사 ·····	2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1 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 등으로 회의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배포해 드린 보고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1일 제 10차 위원회 이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 여러 분의 사 · 보임이 있었습니다.

위원 사 · 보임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간사 위원 및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 하여 간사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권성동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주성영 위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장세환 위원님 인사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위원 장세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회의시간이 15분 늦어진 10 시 15분에 개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개의정족수 가 다 찼는데도 개의시간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 는 것은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바람직 하지 않게 비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위원님 인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 류근찬입니다.

애초에 참여했다가 사 보임으로 잠시 빠져 있 다가 다시 사 보임이 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민주통합당의 정장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되늦게 참여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 주셔서 예측 가능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일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직원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사는 교섭단 체에서 추천해 오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주성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 드린 주성영 위원님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주성영) 인사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주성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 **○주성영 위원** 주성영 위원입니다.

저도 원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것과 업무가 겹치고 해서사퇴를 했었는데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석이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간사 위원이신 주성영 위원께서 맡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사임 위원들이 원래 소속하였던 소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보임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위원 명 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도 위임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소위원회·위원회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는 공직선거관계 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월 18일 오후 2시에는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는 수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획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들의 사·보임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겹쳐 가지고 진도가 아주 매우 늦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1월 13일 전체회의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 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 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 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은 공직선 거법 제93조1항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현행 제 254조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 SNS 등을 이용한 선 거운동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 결 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 시 허용하는 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는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무총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이경재** 백원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3일 날 결정한 것은 매우 타당 한 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서 종 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했고, 93조제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 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러니 까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93조1항에는 선거일 당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 인터넷 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선관위에서 93조1항에 대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180일부터 선거일까 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 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선관위 위원장이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이십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율사들이 많이 참 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 셨다고 보고 빨리 이 결정을 존중해서 저희가 입 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민주 당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경재** 예,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 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곳은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상 독립된 헌 법기관이기는 하나 입법기관은 아닌 게 분명합니

그렇다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제정 취지와 그 정신을 충분히 존중해서 거기에 합당한 하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중앙선관위 가 해야 될 도리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정 위헌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공직선거법 을 정비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 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 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새로운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 당일 날에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허 용하고 있습니다. SNS의 범주에는 우리가 잘 아 는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게 문자메시지 기능 아닙니까? 카카오톡을 이 용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해석으로 따지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일반적인 문자메시지나 본질적으로 내용상에 있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러나 이런 일반 휴대전화 메시지로 하는 것은 지 금 불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운동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그 취지를 정확히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이게 저비용이고 또 후보자들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서 선거운동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적은 사람 적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비용의 인 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화시킴으로써 극복해 보자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르면 투표 당일 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은 오케이, 일반 휴대전화 메시지는 노, 그러면 스마트폰 가진 사람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못 가진사람은 못 하게 한다. 아시다시피 어떤 게 더고급기계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그러한 것인지, 왜 선관위가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멋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선관위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백원우 간사님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회가 법 정비를 하자,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지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거지요.

우리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면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선관위가 그 하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 ○李恩宰 委員 저도……

○백원우 위원 말씀이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러 는데 제가……

○위원장 이경재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신지호 위원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게 결정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이번 1월 13일 중앙선관위 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 보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재** 장세환 위원님!

○**장세환 위원** 첫 회의 참석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선 중앙선관위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 정개특위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점 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께서 중앙선 관위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유감 표명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중앙선관위 조치가 그러면 정치 개혁적이냐, 정치 개악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만이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중앙선관위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 개 혁적 처사라고 그래 가지고 전적인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개 혁을 하자는 것인지 개악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 눈에는 또 이상하게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관위 관련된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인지,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정치개혁특위가 정치 개혁을하는 게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가지고 결국 정치 개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지,이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이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경재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 委員 신지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국회 정개특위에서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발표한 것은 저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계시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결론이내려지면 이것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면서 이 SNS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 제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나 온 결정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총선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서 분명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신지호 위원님과 또 이 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정 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냥 법리적으로 따져서만 본다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정위헌 판결을 내려서 사실상 법조문이 인터넷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해서 위헌임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률이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 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사실상 그 조항이 위헌이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로서는 당연히 이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SNS에 대한 선거운 동을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입장을 밝혔 을 뿐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입법을 하면 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취한 절차상의 문 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조금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적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SNS를 상시로 도입하는 문제가 개혁적이냐. 반개혁적이냐 하는 측면을 제가 제기한 게 아닙 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93조1항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등'이라고 하는 내용에 SNS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254조 여기에서도 엄 격히 여러 가지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54조는 그 정신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엄연히 아직도 법조항이 있고 우 리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하 기 전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부분은 대단 히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측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NS의 도입과 관련된 개혁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느냐, 어떻 게 법조문을 고치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 부 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주성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경재 예.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내용이 선거구 획정이 라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정해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에 10만 명 남짓한 선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방의 17만, 18만, 19만, 20만 명이 넘는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 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도 헌법의 평등권 또 투 표가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또 다른 원 칙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조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도 간 인구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 안의 의원 정수가 있습니다. 시·도 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의 평균 인구수 대비 편차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찬가지로 평등권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구역 개편 특 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6월 말까지 기본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은 다음 지방선거 해인 2014년 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또 선거구에 손대야 됩니 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 한 기본일정을 요약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있 으세요?

백원우 위원님!

○백원우 위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여당에서 벌써 간사가 두 번째 바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간사님 과 저희 당의 간사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됐는데 또 다시 무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의 해소 를 위한 석패율제의 도입, 국민경선제의 도입 등 등 매우 중요한 선거법 개정 논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 고 있어서 저희 정개특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 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뛰어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당에서는 간사님들을 더 이상 교체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재** 예, 김선동 위원님.
- ○**김선동 위원** 먼저 자료요구에 보충할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들에 기존 선거구별 인구수는 있는데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묶여서 하나의 선거구가 된 그런 경우에 그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가 통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즉 농촌지역 같은 경우 여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는데 그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빠르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하고 우리 정개특위가 빠르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원우 위원 월권 아니지.
- ○김선동 위원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 ○위원장 이경재 실무진에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공직선거	◎주성영 권성동 손범규 신지호 이은재	한나라당(5)
관계법심사 소위 (10인)	백원우 정장선 조경태	민주통합당(3)
	류근찬 김선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정당·정치· 자금법심사 소위 (10인)	권성동 성윤환 안효대 유일호 진 영	한나라당(5)
	◎박기춘 장세환 전현희 최규성	민주통합당(4)
	김혜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 ○출석 위원(17인)

김 혜 성 류 근 찬 백 원 우 김 선 동 손 범 규 신 지 호 안 효 대 유 일 호 이 경 재 이 은 재 장 세 환 전 현 희 정 장 선 조 경 태 주 성 영 진 영 최 규 성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원
 탁

 전 문 위 원
 문
 강
 주

####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서종표	정장선	미ス티치다	2012 1 2
이윤석	장세환	민주통합당	2012. 1. 3
김창수	류근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2. 1. 5
김기현	권성동	한나라당	2012.1.12
배영식	주성영		<i>2</i> 012.1.12

###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김춘진·김용구· 김성수 · 안민석 · 김영진 · 신건 · 오제세 · 정병국 · 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3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30 성윤환·김학용·강석호·김성수· 신성범 · 강승규 · 유재중 · 유일호 · 진성호 · 여상규·정해걸 의원 발의)

2012년 1월 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 정태근·김용태·조원진·김성회· 배은희·장제원·조전혁·정수성·권경석· 이군현 · 정두언 · 김동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 이석현·양승조·송훈석·유선호· 김효석 · 최규성 · 김유정 · 강봉균 · 문희상 · 조경태 · 안규백 · 백재현 · 이용섭 · 오제세 · 조영택 · 김성곤 · 최영희 · 신학용 · 전혜숙 · 박우순·이춘석·전현희·추미애·우제창· 박주선 · 박지원 · 김충조 · 장병완 · 김진애 · 박은수·김영록·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4 정미경·김소남·이경재·박순자· 노철래 · 김성수 · 고흥길 · 안상수 · 이화수 · 이인기 의원 발의)

1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 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 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외 1인으 로부터 金先東・백원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 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 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외 1인으 로부터 金先東・백원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 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 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외 1인으 로부터 金先東・백원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1월 6일 회부됨